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1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그동안 물품·용역 및 공사 등 입찰시 건당 5,000원씩 징수해 오던 입찰수수료가 전자입찰 실시(2001.10.1)로 입찰에 대한 공무원의 역무제공이 미미하여 중앙부서 및 협회 등 관련기관 으로부터 폐지건의가 있어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가. 입찰참가신청시 납부하던 수수료 5,000원을 폐지함(안 별표 2 나항 제7호).

III. 검토의견

1. 조례개정 배경

○ 입찰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및 입찰참가자의 부담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2001. 10. 1 도입된 전자입찰 전면 실시 이후 건설 및 전기공사 협회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수수료 폐지 요구와 행정자치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사입찰수수료 징수제도의 개선 및 폐지권고 협조요청이 있어 그동안 물품·용역 및 공사 등 입찰시 건당 5,000원씩 징수해 오던 입찰참가수수료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폐지하게 된 이유가 있다 하셨습니다.

2. 관계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자치법규에 위임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 조문에 대한 예를들면, 제중명 확인발급,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개인을 위한 역무제공을 할 경우에 한하여 징수하도록 반대급부적인 성격으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서면입찰과는 달리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 입찰 및 낙찰자 선정이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결정되는 전자입찰과정에서 특별히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입찰참가자에게 계속하여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전자입찰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구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중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의 약 33.9%를 차지하는 주요재원인 바,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자주재원확보에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세외수입 중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검토하여 조정할 부문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나가는 것이 구재정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3. 타 자치단체 입찰참가수수료 징수 실태

○ 2005. 3. 10 현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자입찰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단체는 없으며, 다만 서면입찰시 3개 광역시(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만 전당 10,000원을 균일 징수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총 234개 단체 중 161개 단체가 징수하고 있는 반면, 73개 단체는 미징수하고 있으며, 또한 2005. 2. 17 현재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 자치구 중 대다수의 구가 전자입찰제도의 도입으로 입찰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행정비용의 역무원가도 감소한 현실을 감안하여 폐지방향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4. 수수료 폐지에 따른 구재정 감소

○ 우리구 년도별 입찰참가수수료 징수 실태를 보면, 2002년도 84,435천원, 2003년도 126,087천원, 2004년도 147,052천원으로서 수수료 징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번에 입찰수수료를 폐지하게 되면, 2005년도 세입예산에 계상된 재무과 증지수입 3억 6,320만원 중 1억여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IV.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第128條 (手数料) 地方自治團體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가 特定人을 위한 것일 경우 그 事務에 대하여 手数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128條 (手数料)

①地方自治團體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가 特定人을 위한 것일 경우 그 事務에 대하여 手数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130條 (使用料의 徵收條例등) ①使用料·手数料 또는 分擔金の 徵收에 관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표 1>

타 자치단체 수수료징수 실태 현황

2005. 3. 10 현재

연번	자치단체별	전자입찰	서면입찰	비 고
1	서울특별시	미 징 수	미 징 수	
2	부산광역시	미 징 수	10,000원	
3	대구광역시	미 징 수	미 징 수	
4	인천광역시	미 징 수	미 징 수	
5	광주광역시	미 징 수	10,000원	
6	대전광역시	미 징 수	미 징 수	
7	울산광역시	미 징 수	10,000	
8	경 기 도	미 징 수	미 징 수	
9	강 원 도	미 징 수	미 징 수	
10	충청북도	미 징 수	미 징 수	
11	충청남도	미 징 수	미 징 수	
12	전라북도	미 징 수	미 징 수	
13	전라남도	미 징 수	미 징 수	
14	경상북도	미 징 수	미 징 수	
15	경상남도	미 징 수	미 징 수	
16	제 주 도	미 징 수	미 징 수	

※ 서울시 : 2005. 1. 5 폐지

<표 2>

자치구별 전자입찰참가수수료 조례개정 추진 현황

2005. 2. 17 현재 (단위 : 원)

자치구별	수수료	조례개정 여부	비 고
종로구	5,000	폐지 입법예고중	- 폐지 완료 (2) - 폐지 의회제출(1) - 폐지 입법예고(4) - 폐지방침 결재(9) - 폐지 검토중 (9)
중 구	5,000	폐지 검토중	
용산구	5,000	폐지방침 결재	
성동구	5,000	폐지 검토중	
광진구	5,000	폐지 검토중	
동대문구	5,000	폐지 검토중	
중랑구	5,000	폐지 검토중	
성북구	5,000	폐지 검토중	
강북구	5,000	폐지 검토중	
도봉구	5,000	폐지 검토중	
노원구	5,000	폐지 입법예고	
은평구	5,000	폐지방침 결재	
서대문구	5,000	폐지 입법예고	
마포구	5,000	폐지방침 결재	
양천구	5,000	폐지방침 결재	
강서구	5,000	폐지안 의회 제출	
구로구	5,000	폐지 검토중	
금천구	5,000	폐지방침 결재	
영등포구	5,000	폐지방침 결재	
동작구	5,000	폐지방침 결재	
관악구	5,000	2005. 1월 폐지	
서초구	5,000	폐지방침 결재	
강남구	5,000	2004. 11월 폐지	
송파구	5,000	폐지 입법예고	
강동구	5,000	폐지 검토중	